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5. 4. 18.>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

(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28. 자동차등록증
29. 자활근로자확인서
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1. 차상위계층확인서
32.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제16조의2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